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9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송재봉 · 허성무 · 복기왕
이수진 · 강준현 · 민병덕
이용선 · 박 정 · 김기표
김남희 · 박정현 · 장철민
김남근 · 이주희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 환경훼손 ·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확산되지 못해 현재 2개소만 조성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체된 상태임. 이처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 환경훼손 ·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 사례가 미미하고, 개발시행자 ·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사업의 위상과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입지 난립 문제의 구조적 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8조의3 및 제4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준산업단지의”를 “그 밖에 준산업단지의”로 한다.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준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준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 또는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입지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 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 5.</u> (생 략)	<u>5. · 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준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 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 률을 완화하여 준산업단지 정 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준산업단지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한정하여</u>

③ <u>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산업단지의</u>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관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	<u>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 또는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준산업단지의</u>----- ----- -----.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 <u>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u>---- ----- ----- ----- ----- ----- ----- -----
--	--

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 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	--